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7년도 제14차 회의

1. 일 자 2007년 6월 21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이 성 태 의 장 (총재) 3. 출석위원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4. 결석위원 이 성 남 위 원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사

김 병 화 부총재보

송 창 헌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정 이 모 기획국장

윤 여 봉 총무국장

장 병 화 정책기획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장 세 근 공보실장

윤 한 근 부총재보

이 주 열 부총재보

이 광 주 부총재보

김 재 천 조사국장

이 흥 모 금융시장국장

이 상 배 금융통화위원회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1호 — 2007년 3/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한국은행의금융기관대출규정 제10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의안 제21호「2007년 3/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2007년 3/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 들어 중소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시중유동성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에 비추어 3/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현행 금융기관 별 한도 3조원의 50% 수준인 1.5조원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나머지 위원들도 이러한 의견에 모두 동의하였음

이와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위원들은 2007년 3/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음

(3)심의 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2007년 3/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6.5조원으로 정한다.

<의안 제22호 — 2007년 3/4분기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한국은행의금융기관대출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의안 제22호「2007년 3/4분기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2007년 3/4분기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 결정」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동 대출이 2003년 3/4분기 이후에는 실제 집행된 사례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상시적으로 거액의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필요시 금통위 의 결을 통해 대출을 실시토록 하는 등 동 대출제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당행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실제 집행은 총재에게 위임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한편 또 다른 일부 위원이 최근 통화 및 금융시장 여건,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의 일시적 유동성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를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나머지 위원들도 이러한 의견에 모두 동의하였음

이와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위원들은 2007년 3/4분기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음

(3) 심의 결과

의결문 작성 · 가결

의결사항

2007년 3/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조절대출 한도를 5조원으로 정한다.